

# 小河川整備의 必要性和 推進方向

內務部 防災局長 鄭 興 秀

## I. 小河川整備의 推進背景 및 必要性

### 1. 推進背景

- 소하천은 '7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소규모로 추진되어 왔으나, 충분한 하폭과 설계기준에 의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을도급등 비전문가에 의한 조잡한 시공과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해발생의 주요인이 되어오고 있었으며,
- '80년대 이후 법제도 미비와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해발생시 무계획적으로 복구에 그치는등 방치되어, 상습적인 수해발생은 물론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원으로 전락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
- '90년대에 접어 들면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문화공간요구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하천공간의 다목적 활용과 더불어 소하천 환경기능 증진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하천의 발원지인 소하천정비사업을 원천적으로 장기계획 하에 추진하는 현실점에서 종래의 치수·이수기능에 환경기능을 도입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  
물과 푸르름이 있는 어릴적 물장구치고 뛰놀던 소하천 본래기능을 회복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원형그대로의 소하천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데 있음

#### < 그간의 推進經緯 >

- |                          |                |
|--------------------------|----------------|
| ○전국의 소하천 실태 일제 조사 실시     | : '93. 3 ~ 12월 |
| ○대통령 농·어촌 특별대책 지시        | : '94. 6. 14   |
| ○농·어촌 특별세 투자계획 확정        | : '94. 7. 4    |
| ○소하천정비법 제정·시행(법률 제4873호) | : '95. 7. 6    |

## 2. 整備의 必要性

- 일반하천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뒷받침되어 정비율이 직할하천은 90.8%, 지방하천은 78.5%, 준용하천은 57.0%로써, 우선 시급한 지역은 거의 완료된 실정이나, 소하천은 지금까지의 정비율 29%가 말해주듯 일반하천과 비교할때 절대 뒤져 있으며
- 지금까지는 새마을 사업, 수해피해시 땀질식 복구등 비전문가에 의한 무계획적인 정비로써, 당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치수·이수기능에 환경기능을 도입한 소하천정비는 전무한 실정에 있음
-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 1만\$ 시대에 걸맞는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반 하천위주의 정비에서 탈피, 소하천정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시대적 요청사항으로써,
- 내무부에서는 '95. 1. 5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하고, 동년 7. 6 시행령을 공포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투자 재원 확보등 많은 애로가 있어,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

### ※ 하천별 정비율 비교

(단위 : 개소, km, %)

하천별	하천수	하천연장	요정비	정비연장	정비율	향후정비
소하천	25,073	38,862	38,087	11,031	29.0	27,056
직 할	62	2,858	1,426	1,294	90.7	132
지 방	55	1,320	632	496	78.5	136
준 용	3,847	26,238	15,999	9,115	57.0	6,884

## II. 現況 및 整備實態

### □ 소하천의 현황

- 전체소하천 —— 총 25,073개소 ( 38,862km )
- 총정비대상 : 38,087km
  - 지금까지 정비 : 11,031km ( 전체의 29% )
  - 향후정비대상 : 27,056km
    - 중앙정부 지원 : 4,450km, 1조원 ( '95~2004 )
    - 자체 추진 : 22,606km, 4조9천억원 ( 2005~2016 )
- ※ 하천법상하천 : 3,964개소 ( 연장30,416km, 정비율60% )

### □ 그간의 정비실태

- '90년대 초반까지 치수·이수 중심 일변도의 하천정비  
⇒ 하천환경적 역기능 초래,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및 관리체계 미흡
- 「수해발생 → 댐질식복구 → 재발생」 등 무계획적으로 정비  
⇒ 체계적·일괄적인 정비가 되지않아 예산낭비 초래
- 하천복개 및 하천구역내 도로건설 등으로 하천부지 점용율 급증  
⇒ 하천의 타용도 점용에 따른 하천기능 상실
- 골재의 폭발적인 수요에 따른 무분별한 하천골재 채취  
⇒ 하상저하에 따른 구조물 훼손, 하천생태계 서식처 파괴
- 고수부지의 무계획적 개발  
⇒ 체계적·종합적이지 못한 하도정비
- 택지 및 단지개발을 위한 하천의 재정비  
⇒ 하천이 없는 신도시 탄생 및 택지개발을 위한 편의적인 하천의 재정비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바 있음

### Ⅲ. 推進上의 隘路

#### 1. 關係機關等の 理解 不足

- 정비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업 추진 의지 소극적
  -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하천정비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추진해주는 사업으로의 인식과,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고, 사업효과도 경제적인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식과
  - 소하천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단체 또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주택건설등에 비하여 외형적·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 홍수피해등 재해가 발생할때만 문제가 유발되는 등으로 평소 소하천정비에 무관심
- 상류부 소하천 미정비로 하류부 주요하천 수질오염 개선에 한계
  - 그동안 하천관리는 최상류의 오염소하천 정비를 소홀히 한채 하류의 본류하천 중심관리로, 오염소하천으로부터 전이되고 있는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즉, 소하천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이 결국 하류부 일반하천으로 흘러감으로써, 전국의 하천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 고도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적정수질의 물공급 불가능
  - 고도산업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질오염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있고 이로 인한 소하천의 자정능력은 계속 상실되어
  - 정화되지 않은 오염된 물이 전국하천으로 확대되어 물이 있어도 쓸수 없는 물로 변해 버림으로써, 물공급을 위한 사회비용의 증가로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2. 投資財源의 限界

### □ 소하천정비를 소홀히한 하천관리로 상습적인 수해피해 반복

- 소하천은 하천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하며, 유역면적이 작아 집중호우시 인접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나 투자재원의 한계로 사전예방적 소하천정비가 되지 못해 매년 수해 피해가 반복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5년간 풍수해로 인한 년평균 피해액은 1,024억원으로 28%이며, 이에대한 년평균 복구비는 1,337억원으로 전체복구비의 31%임

### □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지난

-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같이 소하천정비를 계속 미루므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은 계속 확대될 것임
- 따라서, 소하천정비를 위한 획기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뒷받침 없이는 소하천정비는 계속 늦추워지고 정부의 「물관리 종합 대책」 또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임

#### < 10개년간 소하천정비 추진 목표(안) >

— 우선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을 중심으로 —

- 추진기간 : '95 ~ 2004
- 사업량 : 4,450km
- 사업비 : 10,000억원
  - 95, 96정비계획 : 262km, 1,119억원
- ※ '97년부터 연 1,500억원 정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목표년도 내에 완료토록 추진

## IV. 앞으로의 推進方向

### 1. 中央政府의 積極 支援

#### 〈 基本方針 〉

-1인당 국민소득 1만\$에 걸맞는 안정된 국민의 삶에질 향상-

□ 소하천정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하고

- 소하천정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

□ 정비가 우선 시급한 소하천에 한시적으로 중앙정부 지원

- 중앙지원이 꼭 필요한 지구를 엄선, 사업추진 방향 제시 등 사업효과를 위해 한시적으로 중앙 지원

- 소하천정비에 투자할 수 있는 지금까지 확보된 재원은 '면(面) 지역의 오염소하천'에 투자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세 2,000억원(매년 200억원, 10년)으로,

정비가 시급한 면(面) 지역 수해상습지 및 읍·시 지역의 재해 위험 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지자체에게만 미룰때 장기화 우려

- 홍수피해등 상습적 피해가 증가되는등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물론 복구비 부담이 계속 증가(년평균1,337억원)하고 있으나

소하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한계로, 결과적으로는 예비비등 중앙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소하천에서 재해가 발생할까'하는 안이한 대처

로 갑작스런 불상사 발생 우려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 필요

## 2. 環境機能을 導入한 多目的 整備

- 재해예방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동시에 거양하는 미래지향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치수·이수기능에 환경기능을 도입, 국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어릴때 우리모두가 물장구 치던 향수어린 소하천으로서의 회생을 위해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수계별·유역별 특성을 잘 살려 다목적으로 정비 추진

- 자연과 생물이 살아 숨쉬는 하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우리나라의 하천특성에 잘맞는 소하천 환경정비 기법의 지속적인 개발과 소하천환경정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투자확대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와 함께 농로, 농수로등을 종합정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투자비가 지역에 환류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투자가 되도록 하고, 수계별로 완결될 수 있도록 정비

### < 근거 법률 >

#### ○ 소하천정비법

- 제13조(비용보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 제20조(보조금의 교부) -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 參考資料 >

### 1. 小河川 關聯 主要 事項

#### □ 주요 용어 정의

-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정하여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것을 말함
- 「소하천구역」이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 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제방이 있는 경우,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의 구역을 일컬음
- 「소하천·부속물」이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함.

#### □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

- 지정 및 관리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는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장
- 소하천 지정기준
  - 대 상 : 일시적이 아닌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
  - 규 모 : 평균하폭 2m이상, 총연장(시점-종점) 500m이상



## 2. 小河川整備法과 一般 河川法の 差異點

- 소하천정비법은 일종의 촉진법으로 재해예방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소하천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고
- 하천법은 하천에 관한 기본법으로 주된 내용이 효과적인 치수와 이수를 위한 "하천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관련법상 주요 차이점

구 분	소 하 천 정 비 법	하 천 법
기본성격	정 비 촉 진 법	관 리 법
제정목적	소하천지역의 재해예방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하수로 인한 피해예방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
규정대상	소하천	직할 · 지방 · 준용
주요내용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	하천의 관리 및 사용
지정권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국가(직할 · 지방) 또는 시 · 도지사(준용)
관 리 청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국가(직할) 또는 시 · 도지사(지방 · 준용)
소유권의 귀 속	국유 · 공유 또는 사유	국유(직할 · 지방) 또는 국유 · 공유 · 사유(준용)

### 3. 全國 小河川 現況

구 분	하천 수	연 장	정 비 수	정비 대상	정비율
계	25,076	38,854	11,806	27,048	30(%)
서울	25	43	20	23	47
부산	98	115	43	72	37
대구	249	352	194	158	55
인천	178	247	45	202	18
광주	110	188	105	83	56
대전	76	115	66	49	57
경기	2,704	3,838	808	3,030	21
강원	2,705	6,165	2,852	3,313	46
충북	2,244	3,643	965	2,678	27
충남	2,432	3,237	783	2,454	24
전북	2,609	3,497	529	2,968	15
전남	3,646	5,395	1,474	3,921	27
경북	4,699	8,020	3,027	4,993	38
경남	3,208	3,785	880	2,905	23
제주	93	214	15	199	7

#### 4. 事業別 投資實績 및 整備率 比較

공 종 별	대상연장 (km)	'94까지 실적 (km)	'95실적 (km/억원)	포장율% (정비) '94→'95	관 리 청
소 하 천	38,087	10,899	132	28 → 29	시 장 군 수 구 청 장
			541		
일반하천 총 계	36,113	21,521	289	59 → 60	건 설 교 통 부 시도지사
			2,130		
직 할	2,851	2,560	28	90 → 91	건 설 교 통 부 시도지사
			422		
지 방	1,264	977	15	77 → 79	시도지사
			156		
준 용	31,998	17,984	246	56 → 57	시도지사
			1,552		
시 도	9,791	7,165	70	73 → 74	시 장
			3,485		
지 방 도	10,643	9,804	292	92 → 94	도 지 사
			4,396		
군 도	25,748	12,958	549	50 → 52	군 수
			1,552		

※ 일반하천 현황은 '93까지의 실적 및 '94실적임